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·공포와 관련 법률 시행 전(공포 후 1년)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.

- 법 제12조의2(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·운영 등) 개정·공포(2020. 10. 20)
- 법 제12조의3(119항공정비실의 설치·운영 등) 개정·공포(2021. 1. 5.)

3. 주요내용

가. 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 조항 신설(안 제15조의2)

- 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을 위한 근무자 및 근무체제를 정함.(안 제5조의2제1항)
- 119항공운항관제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 시·도 소방본부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.(안 제15조의2제2항)
- 그 밖에 운항관리 및 시설기준 등 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.(안 제15조의2제3항)

나. 119항공정비실 운영 조항 신설(안 제15조의3)

- 119항공정비실 운영을 위한 항공정비사를 배치함(안 제15조의3제1항)

- 119항공정비실에서 정비할 수 있는 항공기를 정함(안 제15조의3제2항)
- 그 밖에 근무방법 및 교육훈련 등 119항공정비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15조의3제3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 및 제1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)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.

1. 「항공안전법」 제35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

2. 기타 소방청장이 항공운항관제 경력을 인정하는 사람

②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항공기 운항 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 소방청 및 시·도 소방본부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운항관리, 시설기준 등 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제15조의3(119항공정비실 운영)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「항공안전법」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.

② 119항공정비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119항공대의 항공기 및 기타 소방청장이 정하는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근무방법, 교육훈련 등 119항공정비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의3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제15조의2(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)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. 1. 「항공안전법」 제35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. 기타 소방청장이 항공운항관제 경력을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항공기 운항 정보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 소방청 및 시·도 소방본부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

<신 설>

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운항관리, 시설기준 등 119항공운항관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제15조의3(119항공정비실 운영) ①
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119항공
정비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「항공
안전법」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
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배치하여
야 한다.

② 119항공정비실은 법 제12조제1
항에 따라 편성된 119항공대의 항
공기 및 기타 소방청장이 정하는
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근무방법, 교육훈련 등
119항공정비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
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소방청 항공통신과	
연 락 처	(04) 205 - 7701